

# 연구윤리규정



사단  
법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년 10월 8일 제정

2009년 3월 18일 개정

2010년 5월 4일 개정

2012년 3월 5일 개정

2016년 9월 28일 개정

2019년 1월 10일 개정

2021년 10월 15일 개정

2026년 6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 및 기타 간행물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논문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투고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과 제출에 있어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표절(2010.5.4개정)** ① 저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경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3.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이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4.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출처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2.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
3.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

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제2조의 2 위조와 변조(2010.5.4 신설)** ①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위조 행위나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저자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실수에 의한 연구 데이터의 오류도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제2조의 3 왜곡(2010.5.4 신설)** ① 저자는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저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의 1 (미성년자 및 특수관계인 공동연구 참여)** ① 논문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 활동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사전 공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미성년 참여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조의 1 ①항의 승인없이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기여도 허위 기재 또는 기타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연구논문의 저자(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속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2021. 10. 15.>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2012.3.5 개정)** ① 저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al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한다. 따라서 논문의 모든 공저자는 각각의 참여역할에 대해서 논문의 후기 다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0>

**제6조 (이해상충)** 모든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 및 해석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인이나 조직과의 재정적, 개인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선언하여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시는 고용, 자문, 유료자문 서비스, 주식 소유권, 유료 전문가 증언, 인세, 특허 출원/등록, 정부지원금 또는 기타 기금 등이 있다.<신설 2019. 1. 10>

#### **제6조의2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 ① 저자는 논문 작성, 연구자료 정리, 문헌 검토, 번역, 문장 교정, 도표 작성, 코드 생성, 아이디어 도출 등 연구 및 학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범위와 내용을 연구결과물 내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 학술적 판단 및 연구책임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그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실 오류, 허위 정보, 부정확한 인용,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 표절,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④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저자로 표시할 수 없으며,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의 저자 자격 및 책임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저자 표시 원칙에 따른다.
- ⑤ 생성형 AI 활용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활용 기록 제출, 심사 및 판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다.<신설 2026. 6. 1>

**제7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2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제 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저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3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 (심사원칙)**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4조 (심사결과기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5조 (비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및 기타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2009.3.18신설)**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게재 전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처리절차)** 논문 심사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편집위원장에게 제기할 경우 종합적인 평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19조 (게재 논문 자진철회) (2016. 9. 28신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철회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게재와 전혀 연관성이 없으나 저자가 게재된 논문의 후속 연구 진행 중에 게재된 논문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거나 공저자들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모든 저자가 철회를 합의한 경우, 이를 학회 측에 알려서 자진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소명서를 제출받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여 게재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해당 논문 철회를 위하여 이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해당 논문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20조 (게재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처리절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문책, 엄중문책 등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경고) 논문 내용이 이미 게재 · 출간된 논문 1편과 20% 이상 35% 이하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소명서를 제출받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② (문책) 논문 내용이 이미 게재 · 출간된 논문 1편과 35% 초과 50% 이하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③ (엄중문책) 논문 내용이 이미 게재 · 출간된 논문 1편과 50% 초과인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위의 조치 후에 본 학회 회장은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와 공문을 발송한다.

**제21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정관의 규정(제27조 이사회의 기능)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윤리규정의 공지)**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짝수 월의 첫 주에 이메일로 전 회원들에게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공지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및 제3자(연구전문기관)에게 제공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 이용목적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이용됩니다.
  - 제 3자에게 제공 시 감사 및 실사, 정밀 정산 등 논문 게재 후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 ·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일반정보: 성명, 소속기관/직위, 연락처, 계좌번호, 자택주소, 학력정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 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및 제3자(연구전문기관)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이용목적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이용됩니다.
  - 제 3자에게 제공 시 감사 및 실사, 정밀 정산 등 논문 게재 후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li> <li>-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li> <li>- <b>특수관계인</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li> </ul>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V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A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 (conference)		학술지 (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대회 명 :</li> <li>- 발표논문명 :</li> <li>- 개최지 및 개최기간 :</li> <li>- 참여저자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지명 :</li> <li>- 논문명 :</li> <li>- 논문 투고 예정일 :</li> <li>- 참여저자 :</li> </ul>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서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계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b>특수 관계인</b>				

※ 주의사항 :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 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계획	연구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	( )%	( )%	
저자 B	( )%	( )%	( )%	( )%	( )%	
<b>특수 관계인</b>	( )%	( )%	(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

항목	내용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짜깁기 표절 방지	

( )년 ( )월 (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서명	저자 A	저자 B	<b>특수관계인</b>
확인 서명			

## 미성년 참여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동안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며,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가 본인의 입학 대학(해외 대학 포함) 또는 연구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2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 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 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 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0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참여 학생명 : (서명)

(확인자) 참여 학생의 법정대리인 관계 및 성명 : 관계 / (서명)

(서약자) 연구책임자명 : (서명)

첨부 1. 법정대리인 증명서류(ex,가족관계증명서)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 세칙

2007년 10월 8일 제정  
2009년 3월 18일 전면개정  
2010년 5월 4일 개정  
2012년 3월 5일 개정  
2026년 6월 1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이하 “회지”라 한다)에 투고하여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 제출 등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적절한 승인 혹은 출처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2010.5.4추가)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 기관

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2012.3.5개정)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에 대한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당연직으로 회장, 논문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2.3.5개정)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2012.3.5개정)

④ 삭제(2012.3.5개정)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논문지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명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예비조사위원회)

- ① 위원장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11조(예비조사의 결과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 제12조(본조사 기간 및 방법)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본조사 위원회 구성)

- ① 조사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본조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④ 당해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기피, 제척, 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출석 및 자료 제출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 3.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 4. 관련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6. 조사위원명단

**제19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3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 제24조 (목적)

이 장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연구윤리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과 표시 방법, 활용 기록 제출 및 심사상 고려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5조 (정의)

- ①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영상, 데이터, 도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연구자”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회원, 학회지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회의 연구·출판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생성형 AI 활용”이란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문장 생성, 문장 교정, 번역, 요약, 문헌 검색 보조, 아이디어 도출, 자료 정리, 코드 생성, 표·그림 작성 보조, 데이터 해석 보조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6조 (생성형 AI의 활용 원칙)

- ① 연구자는 생성형 AI를 연구 및 논문 작성의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 연구 설계, 데이터 해석, 결과 검증, 결론 도출 및 학술적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②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형 AI가 생성한 문장, 자료, 코드, 표, 그림, 분석 결과 등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이 기존 문헌, 타인의 저작물, 공개 데이터, 저작권 보호 자료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출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자료, 허위의 연구결과, 부정확한 인용, 실재하지 않는 참고문헌, 왜곡된 데이터 또는 조작된 결과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⑤ 생성형 AI는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저자, 공동저자 또는 기여자로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생성형 AI의 활용 사실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제27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및 활용 기록)

- ①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논문 작성, 연구자료 정리, 번역, 문장 교정, 도표 작성, 코드 생성, 아이디어 도출, 자료 분석 보조 등에 활용한 경우에는 그 활용 범위와 내용을 논문 내 적절한 위치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 방법, 자료 분석, 결과 도출, 표·그림 작성, 코드 생성 또는 논문의 주요 내용 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 연구자는 본문, 연구방법, 주석, 사사, 부록 또는 별도 설명문 중 적절한 위치에 활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생성형 AI의 활용이 번역,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등 제한적·보조적 수준에 그친 경우에도,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활용 사실의 설명 또는 활용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연구자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성형 AI 도구 또는 서비스의 명칭
  2. 개발사 또는 제공기관
  3. 사용한 모델명 또는 버전
  4. 사용 일자 또는 사용 기간
  5. 활용 목적 및 활용 범위
  6. 주요 입력 내용 및 출력 결과의 개요
  7. 연구자가 수행한 검증 및 수정 내용
- ⑤ 생성형 AI 활용 사실은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사사 표기 예시: “본 논문의 영문 표현 및 문장 교정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연구 내용, 분석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2. 연구방법 또는 부록 표기 예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정리 및 코드 초안 작성 보조를 위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생성된 결과는 저자가 직접 검토·수정·검증하였다.”
3. 참고문헌 또는 주석 표기 예시: “개발사, 모델명, 버전, 웹링크, 사용일자, Gen AI”의 형식을 참고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제28조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치)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 활용 범위, 표시의 적절성 및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 활용 범위 설명서, 원자료, 코드, 참고문헌 확인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저자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허위자료, 허위 인용, 조작된 결과 또는 표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④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그 조사 및 판정 절차는 이 세칙의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를 따른다.
- ⑤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의 정도, 고의성, 논문 내용에 미친 영향, 저자의 소명 내용 및 수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문 수정 요구, 게재 보류, 게재 불가, 게재 후 철회 요청,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세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전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본 개정 세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사실의 확인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